


<연말정산 신고안내>

안녕하십니까? 『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의의

근로소득자가 1년 간 받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후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간이세액’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비교한 후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이를 23년 2월 귀속분 급여를 지급할 때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시기	절 차	실행자	내 용
1월 초	연말정산 안내	회사가 근로자에게	①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②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등 (www.hometax.go.kr)
1.10 ~1.3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근로자	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16부터 가능) (※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 수집 (안경·교복 구입비 등)
~1.31	세무사에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서 (PDF 파일) E-mail 전송	회사가 세무사에게	1. 홈택스 접속 후 첫 화면 최상단 > [로그인] > [회원 / 비회원 로그인] 2. 조회/발급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3.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우측 상단 [한번에 내려받기] 4.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는 [제공동의현황] > [자료제공동의 신청] ① 부양가족이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②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를 위한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가족에게 요청) ※ 해당 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 ⇨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팩스 인증 중 1개의 수단으로 인증 
			[부수적 절차] 1.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전달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은 정부민원포털(www.gov.kr/portal/main)에서 무료 발급 3. 22년 중도입사자 또는 근무지 2 이상인 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3.10		회사가 국세청으로	1. 연말정산 세액은 회사에서 23년 3월 10일까지 납부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3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연말정산 기간에는 업무량이 많아 개별 질의에 대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회사 담당자를 통하여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요건 및 필요서류

구분	공제항목	공 제 요 건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준비서류 등	서류발급처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 소득금액(종합·퇴직·양도소득 합계) 100만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중 ① 본인 (소득제한 없음) ② 배우자 ③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④ 직계비속·입양자 (만20세 이하 2002.01.01. 이후 출생) ⑤ 형제자매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⑥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⑦ 위탁아동 (만18세 이하,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1인당 연 150만원	종합소득금액 한도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본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신규입사자 또는 공제가족 변동자만	구청 읍·면·동 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재학·요양·재직 증명서 첨부 - 가족 중 취학·질병요양·근무 등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본인 작성			
		* 입양관계 증명서·입양증명서 중 1부 -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구청 동사무소 입양기관			
		*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해당 급여를 받는 자	읍·면·동 사무소			
	* 가정위탁 보호확인서 -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나이제한 없음)	연 200만원		* 장애인등록증·국가보훈처발행증명서 · 장애인수첩사본 중 1부	국가보훈처 읍·면·동 사무소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연 100만원		* 장애인증명서 (항시치료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중 1부	구청 읍·면·동 사무소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연 금 보 험 료 공 제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본인부담 전액	* 일괄 공제되므로 별도 신청 X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공제 반영) ※ 지역가입자 납부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제출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고용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건강·고용보험	본인부담 전액		국민건강 보험공단	

※ 소득공제 요건 및 필요서류

구분	공제항목	공 제 요 건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준비서류 등	서류발급처
특별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p>장기주택저당차입금 (15년 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p> <p>① 취득당시 무주택·1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②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에 저당권 설정을 한 뒤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③ 금융기관에서 차입(근로자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일 것)</p>	이자 상환액 100%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해당 금융회사 구청 읍·면·동 사무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군·구
		<p>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p> <p>①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원리금 상환액</p> <p>[금융기관 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차입금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것</p> <p>[개인 차입금]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법정 이율(1.2%) 이상으로 차입한 금액일 것</p>	원리금 상환액 40% (B)	Min(①, ②) ① A+B+C ② 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 (차입금 상환기간, 이자지급 방식, 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달리 적용)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해당 금융회사 구청 읍·면·동 사무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 밖의 공제		<p>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p> <p>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인정)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p>	저축 납입액 40% (C)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다음 과세연도 2월 말까지 제출) * 주택마련 저축통장 사본	해당 금융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공제 요건 및 필요서류

구분	공제항목	공 제 요 건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준비서류 등	서류발급처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공제대상액 :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이 없으며,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공제배제 : 사업관련비용, 자동차 구입비, 취득세등이 부과되는 재산(중고차 구입액의 10%는 제외)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제세공과금, 상환권, 리스료, 국외 사용분,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 세액공제 적용받은 월세액·정차차금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 15%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대상 직불카드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40% 공제대상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단, 도서공연 사용분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적용)	①기본 한도 a.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20% 중 적은 금액 b.총급여 1억2천만 이하: 250만원 c.총급여 1억2천만 초과: 200만원 ②추가 한도 : ㉠+㉢+㉡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도서공연 사용분 30% (㉠㉢㉡ 각각 1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현금영수증 (주액 월세 가능)	신용카드 발급회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①2000.12.31. 이전 가입 ②만 20세 이상 소득자 ③불입기간 10년 이상 ④분기 300만 이내 불입	불입액 40%	연 72만원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해당 금융기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분기별 300만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공제부금 납부액	<table border="1"> <tr> <th>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th> <th>한도</th> </tr> <tr> <td>4천만원 이하</td> <td>500만</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300만</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00만</td> </tr> </table>	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	1억원 이하	300만	1억원 초과	200만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중소기업 중앙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업소득금액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													
1억원 이하	300만													
1억원 초과	200만													
투자조합 출자공제	2020.12.31.까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table border="1"> <tr> <th>투자액</th> <th>공제액</th> </tr> <tr> <td>3천만 이하</td> <td>투자액 100%</td> </tr> <tr> <td>5천만 이하</td> <td>투자액 70%</td> </tr> <tr> <td>5천만 초과</td> <td>투자액 30%</td> </tr> </table>	투자액	공제액	3천만 이하	투자액 100%	5천만 이하	투자액 70%	5천만 초과	투자액 30%	투자액의 10%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에 따름) 종합소득금액의 50%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중소기업청 투자조합	
투자액	공제액													
3천만 이하	투자액 100%													
5천만 이하	투자액 70%													
5천만 초과	투자액 30%													
우리사주 조합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	연 400만원 (단, 벤처기업 등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연 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 확인서	우리사주 조합									

※ 소득공제 요건 및 필요서류

구분	공제항목	공 제 요 건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준비서류 등	서류발급처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에도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에 따라 다음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고용유지 ②임금총액 감소 ③시간당 임금 감소×	임금 삭감액 50%	1,000만원	* 사업주·근로자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기업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가입시 직전연도 총급여 5 천만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 (인당 연 600만 이내 납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 납입액의 40%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해당 금융회사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 5백만원
<p>한도 적용 소득공제 :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투자조합(중소기업 등)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p> <p>한도 미적용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투자조합(벤처기업 등)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p>	

※ 세액공제 요건 및 필요서류

구분	공제항목	공 제 요 건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준비서류 등	서류발급처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다음의 자가 중소기업 취업 ①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15~34세인 자(6년 한도 병역기간 제외)) ②만60세 이상인 자 ③경력단절여성 ④장애인	[일반]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90% (18년 이후 귀속부터 취업연도 상관없이 90%)	연 150만원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명세서	근로자 본인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국의 근로소득자도 적용)	<table border="1"> <tr> <th>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th> <th>공제액</th> </tr> <tr> <td>130만 이하</td> <td>산출세액 55%</td> </tr> <tr> <td>130만 초과</td> <td>715,000원 +(산출세액-130만)×30%</td> </tr> </table>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 이하	산출세액 55%	130만 초과	715,000원 +(산출세액-130만)×30%	<table border="1"> <tr>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r> <td>3,300만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7,000만 이하</td> <td>66만원</td> </tr> <tr> <td>7,000만 초과</td> <td>50만원</td> </tr>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 이하	74만원	7,000만 이하	66만원	7,000만 초과	50만원	별도 신청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 이하	산출세액 55%																								
130만 초과	715,000원 +(산출세액-130만)×30%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 이하	74만원																									
7,000만 이하	66만원																									
7,000만 초과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①자녀수 공제(7세이상)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②출산·입양 공제 첫째 : 연 30만원 둘째 : 연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중 1부	구청·읍·면·동 사무소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 공제액 : 연금계좌 납입액(*) × 공제율(**) * 한도 및 공제율 ㉠ 50세 미만인 경우 <table border="1"> <tr> <th>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th> <th>납입한도액 (**)</th> <th>공제율 (**)</th> </tr> <tr> <td>4천만원(5,500만원)이하</td> <td>연금저축 400만</td> <td>15%</td> </tr> <tr> <td>1억원(1억2천만원)이하</td> <td>연금+퇴직 700만</td> <td rowspan="2">12%</td> </tr> <tr> <td>1억원(1억2천만원)초과</td> <td>연금저축 300만 연금+퇴직 700만</td> </tr> </table> ㉡ 50세 이상인 경우 <table border="1"> <tr> <th>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th> <th>납입한도액 (**)</th> <th>공제율 (**)</th> </tr> <tr> <td>4천만원(5,500만원)이하</td> <td>연금저축 600만</td> <td>15%</td> </tr> <tr> <td>1억원(1억2천만원)이하</td> <td>연금+퇴직 900만</td> <td rowspan="2">12%</td> </tr> <tr> <td>1억원(1억2천만원)초과</td> <td>연금저축 300만 연금+퇴직 700만</td> </tr> </table>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	공제율 (**)	4천만원(5,500만원)이하	연금저축 400만	15%	1억원(1억2천만원)이하	연금+퇴직 700만	12%	1억원(1억2천만원)초과	연금저축 300만 연금+퇴직 700만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	공제율 (**)	4천만원(5,500만원)이하	연금저축 600만	15%	1억원(1억2천만원)이하	연금+퇴직 900만	12%	1억원(1억2천만원)초과	연금저축 300만 연금+퇴직 700만	* 연금납입 확인서	해당 금융회사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	공제율 (**)																								
4천만원(5,500만원)이하	연금저축 400만	15%																								
1억원(1억2천만원)이하	연금+퇴직 700만	12%																								
1억원(1억2천만원)초과	연금저축 300만 연금+퇴직 700만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납입한도액 (**)	공제율 (**)																								
4천만원(5,500만원)이하	연금저축 600만	15%																								
1억원(1억2천만원)이하	연금+퇴직 900만	12%																								
1억원(1억2천만원)초과	연금저축 300만 연금+퇴직 700만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액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②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③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거주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의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에는 월세액의 12%)	연 75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포함)에는 연 90만원)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 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임대인																					

※ 세액공제 요건 및 필요서류

구분	공제항목	공 제 요 건	공 제 액	공 제 한 도	준비서류 등	서류발급처
특 별 세 액 공 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①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료 또는 ②장애인전용 보장 성보험료를 보험계약에 따 라 지급할 것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 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일 것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명의 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일 것	①×12% + ②×15%	①, ② 각각 연 100만원 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회사) *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	해당 금융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않음)을 위하여 공제대 상 의료비를 지급할 것 *공제불능 의료비 ①미용·성형수술비용 ②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③국외 의료기관 의료비 ④제대혈, 간병인 비용 ⑤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 비	(일반의료비·특정의료비 - 총급여액 3%) × 15% + 난임수술비 × 20% * 특정의료비란 본인, 만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대상 의 료비를 말한다.	일반의료비 지급액은 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국제청 발급 인터넷증빙서류 * 장애인 보장구 판매자 확인영수증 * 안경 구입 영수증 (1인 50만원 한도)	병원, 약국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등 판매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나이제한없음)을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비를 지급할 것	교육비의 15%	①본인, 장애인 : 전액 ②직계존속을 제외한 기 본공제대상자 ■ 대학생 1명당 900만 ■ 초·중·고·취학 전 아동 1명당 300만	* 학교에 지급한 모든 비용 (방과 후 수업 재료비, 학생회비, 여학연수, 학교버스비용, 기숙사비 등 제외) * 중고등학생 교복 (1인당 50만원)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알려 줘야함 * 취학전아동 학원교육비 납부영수증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 수업료영수증·재학증명서 ·공제대상가능 증명서류 (유학자녀)	학교장 구입처 학원장 장애인 특수 교육기관 국외 교육기관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 10만원 이하 2) 10만원 초과 법정·우리사주·지정 기부금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 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포함)가 공제대상 기부금 지 급할 것 *본인의 기부금 뿐만 아니 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 가족(나이제한없음)이 지급 한 기부금도 포함함.	1) 기부금액의 100/110 2)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 사업자인 거주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기부금액의 15% (기부금액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	*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 온라인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납입영수증 *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기부금 접수기관 단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우리사주 조합
	표준 세액공제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특 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자 : 연 13만원 성실사업자 : 연 12만원 그외소득자 : 연 7만원	-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선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선정특례자	실손의료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국세청계										
0						기타 계										
(근로자본인)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자료구분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구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등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등 중 발달장애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 15년	기타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7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2018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벤처 등						
	2019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정부가협약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보 험 료	보 장 성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 료 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납입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취학전 아동 (명) 초·중·고등학교 (명)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장애인 (명)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작성방법 참조		15%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공납금	1명당 300만원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전액								
	교육비 계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5% 또는 25% 또는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직책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30%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 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리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한 도 액	
		2017년 출자·투자분	10%(100%,5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18년 출자·투자분	10%(100%,70%,3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2019년 출자·투자분				
신용카드등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합니다)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4.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장애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